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12. 16(목)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2일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10년 12월 16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고규창 정책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관련 법령과 통합되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법적, 제도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일부내용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
 -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 지역정보화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기구 정비(안 제6조)
 - 명 칭 : 지역정보화협의회 → 충청북도지역정보화위원회
 - 위원장 : 도지사 → 행정부지사
-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정보화 환경변화의 반영을 위한 규정 신설
 -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 (안 제8조)
 -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9조), 정보화의 역기능 해소사업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8조)
- 정보화 용역, 유지보수, 보안관리, 보험 등 기존법령과 중복사항 삭제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윤양한)

-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통합 개정과 정보화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중 11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첫째, 현행 조례에 의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 및 본 조례안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제4조, 제5조)

둘째, 정보화 관련 각종 지원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제9조, 제12조, 제14조)

셋째, 도내 농촌주민,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넷째, 신종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 대책

다섯째, 행정정보 제공 관련,

-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징수실적 및 징수 필요성
-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정보 제공 여부 심사에 대한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준용 가능 여부

여섯째,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 사유 및 기계사용료, 전산자료 입력료 등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

일곱째,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사항의 수수료감면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도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도민의견 수렴·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1명
2. 정책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균형건설국장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정책관리실장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도지사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도지사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행정정보 제공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행정정보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과다하게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수수료의 산정기준, 감면 등에 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 제14조(정보화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 제15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도지사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6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

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 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보호) ① 도지사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정보운영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협의회 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종전의 「충청북도 전자계산조직 사용자료징수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행정정보 제공 신청서(제13조제2항 관련)

신청내용		사용용도	
법적근거		자료요구범위 (자료내용)	
제공방식		보관 및 안전관리대책	
기 타			
<p>「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 13조제 2항에 따라 행정정보 제공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p> <p>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p> <p>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p> <p>주소 :</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별표 2]

행정정보 제공 수수료 산정기준(제13조제4항 관련)

구 분	내 역	산 출 기 초
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	인건비	일반직공무원 6급20호 봉급 ÷30×작업일수
	소모품비	실 비
	제잡비	(인건비+소모품비)의 40%
수수료 감면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면제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제공이 지연되었을 경우	과다 소요시간/전체 소요시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주) 봉급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본급여를 말한다.

관계법령발췌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사회의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의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2.4>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 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이하 "인터넷 중독"이라 한다)을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 매년 4월 30일
2. 지방자치단체 : 매년 7월 31일

② ~ ⑤ 생략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